

# 「재단법인 구미문화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」

## 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6년 4월 7일

나. 제출자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6년 4월 8일

라. 상정일자: 2026년 4월 16일

제29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### 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영일

#### 나. 제안이유

- 1) 「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」(2025. 4. 2. 제정)에 따라 출연금 등의 정산 결과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시에 반납하도록 규정됨에 따라, 재단 정관의 잉여금 처리 관련 조항과 상이한 사항을 상위 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자 함.
- 2) 「행정안전부, 지방출자·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」에 따라 세입·세출 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기본재산에 편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, 이사회 의결 절차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.
- 3) 「재단법인 구미문화재단 정관」 제37조에 따라 정관 개정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.

## 다. 주요내용

- 잉여금 처리 규정 개정 (안 제28조)
  - 출연금 등 정산 결과 발생한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규정 반영
  - 잉여금 기본재산에 편입 시 이사회 의결 절차 명확화

## 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」  
「2026년도 지방출자·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」

## 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장 창 곤

### ○ 본 동의안은

- 「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구미문화재단의 잉여금 처리 기준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### ○ 검토 결과,

- 출연금의 정산 결과 발생한 집행잔액과 이자를 시에 반납하도록 규정하고, 재단 목적사업 등에 잉여금 사용 시 이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재단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집행잔액 반납이 의무화됨에 따라 회계연도 말 무리한 예산 집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, 면밀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집행기관의 관리·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.

- 아울러, 시에 반납해야 할 재원과 재단이 자체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혼재되지 않도록 재원별 회계 처리를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